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6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는 물리적 의미의 '탈시설' 용어 대신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용어로 대체 사용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례명 또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